

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2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제1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9월 9일) 상정

○제1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9월 9일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정부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 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3.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

설치근거	기능	개최실적			위원현황			비고
		'05년	'06년	'07년	계	공무원	외부인사	
맞춤형복지운영 조례 제7조	자문	1회	1회	1회 (서면)	8명	4명	4명	시의원2명 전문가2명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? ◦ 위원회 정비방향이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장은 부시장, 위원은 국장으로 구성됨. ◦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6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9호
의결 년월일	2008. 9. 10 (제146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8. 2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용어의 정의는”을 “용어의 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맞춤형 복지제도”라 함은”을 ““맞춤형복지제도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기본항목”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”을 ““기본항목”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필요에 의하여”를 “필요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자율항목”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”을 ““자율항목”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선택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선택안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“복지점수”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“복지점수”란 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기본복지점수”라 함은 소속 공무원”을 ““기본복지점수”란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“변동복지점수”라 함은”을 ““변동복지점수”란”으로 하고,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상근인력”을 “무기계약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”를 “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”을 “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전체공무원이”를 “소속공무원 모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”를 “부천시시정조정위

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소속공무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후생복지제도에 의한”을 “후생복지제도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과면·휴직·과건”을 “과면 및 휴직 또는 과건”으로 하며, 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”를 “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)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조를 제12조로 하며, 같은 조 제12조(중전의 제14조)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공무원의 <u>맞춤형 복지제도</u>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맞춤형 복지제도</u>”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기본항목</u>”이라 함은 <u>맞춤형 복지제도</u>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·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자율항목</u>”이라 함은 <u>맞춤형 복지제도</u>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·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선택안</u>”이라 함은 기본항목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맞춤형복지제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u>용어의 뜻은</u>-----.</p> <p>1. “<u>맞춤형복지제도</u>”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<u>기본항목</u>”이란 <u>맞춤형복지제도</u>에 따른----- -----<u>필요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“<u>기본항목</u>”이란 <u>맞춤형복지제도</u>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“<u>선택안</u>”이란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.</p> <p>5. “복지점수”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·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,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6. “기본복지점수”라 함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.</p> <p>7. “변동복지점수”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속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(이하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②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휴직 중인 공무원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“복지점수”란 맞춤형복지제도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“기본복지점수”란 공무원----- ----- -----.</p> <p>7. “변동복지점수”란----- -----공무원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 ----- -----무기계약근 로자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맞춤형복지 제도----- -----.</p> <p>1. -----소속공무원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4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</p> <p>제4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)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.</p> <p>제5조(기본항목) ① (생략)</p> <p>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<u>전체공무원</u>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·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</u>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<u>소속 공무원</u>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시장은 <u>소속 공무원</u>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</p>	<p>4. <u>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4조(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)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기본항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소속공무원</u> <u>모두가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<u>소속공무원에게</u>----- -----.</p> <p>⑤ <u>소속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전직·직위해제·면직·해임·파면·휴직·파견(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파면 및 휴직 또는 파견--- -----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총무업무담당</p>	<p>제11조(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)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/p> <p>1.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2.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국장, 예산업무담당국장, 복지 업무담당국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부천시의회 의원, 공무원단체 소속공무원,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직 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 임할 수 있다.</p> <p>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·조정한다.</p> <p>1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</p> <p>2.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접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그 밖에 시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일비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 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시행 에----- -----.</p>